

IFRS9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시인식이 은행업의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

전병욱*

〈요 약〉

본 연구는 2018년의 IFRS9의 시행 이후에 금융상품 분류기준의 단순화 및 손상 인식의 적시성 강화가 은행업의 회계처리 및 손실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 IFRS9의 시행에 의해 시중은행들의 금융자산의 꾸준한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지만, 다시 원래의 추세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IAS39 → IFRS9의 전환으로 인해 4대 시중은행의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이 1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IFRS9의 시행이 시중은행들의 금융자산 계상액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금융자산의 감소액은 모두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전환시점인 2017년말에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금융자산 금액의 0.49%에서 0.57%로 증가했고, 이러한 결과가 IFRS9의 시행 직후인 2018년에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에 대한 일시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 중 손실충당금 비율은 자산관리의 효율화 노력 등을 반영해서 2015년의 0.74%에서 2021년의 0.44%로 장기적인 하락추세를 보였는데, 이와 함께 2017년말의 IFRS9 전환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을 반영해서 일시적으로 급등했고(0.50% → 0.60%), 2020년의 일부 은행들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동(同)추세에 대한 일시적 반전이 발생(0.40% → 0.46%)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IFRS9의 적용 이후 누적적인 일시적 차이를 반영해서 4대 시중은행의 법인세 부담액은 과거 4년간(2018년-2021년) 1,156억원 감소한 반면 장래 5년간은(2022년-2026년) 1,678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서 2018년부터 IFRS9의 적용으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초기에는 손실충당금 비율이 커져서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 반면 기간 경과에 따라 일시적 효과의 반전으로 인한 영향으로 장래에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제어〉 IFRS9, 대손충당금, 손상 인식, 은행업, 경영실적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bwjun@uos.ac.kr

I. 서 론

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이용자와 이해관계자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이하 “IAS39”)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으로 그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IAS39의 손상평가는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도록 하여 경기침체시 금융기관의 손익 변동을 과다하게 발생시키고, 재무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위험이 있었다(신유정과 이영한 2020).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는 2009년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및 손상 관련 기준서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장기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4.7.24.에 IAS39를 대체하는 금융상품의 새로운 기준서인 IFRS9(금융상품)을 확정해서 발표하고, 2018.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 2015.9.25. 제정, 이하 대부분 “IFRS9”로 지칭)는 ①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범주의 단순화 ② 대손충당금 산출 방법론 변화 및 ③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의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기준서 확정 후 2015년말부터 IFRS9의 도입 준비에 착수했고, 새로운 기준서 적용을 위한 장기간의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18.1.1.부터 새로운 기준서의 회계처리 변경을 순조롭게 이행하였다.

이상과 같은 2018년 이후의 IFRS9의 다양한 시행 내용 중에서 특히 대손충당금의 적시 손실 인식은²⁾ 은행과 같이 대부분의 자산이 금융자산으로 구성된 금융기관의 변경된 회계처리를 통해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³⁾.

따라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과 다른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매우 중요한 이들 시중은행들이 IFRS9의 시행 이후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그 동안의 대손충당금의 적시 손실 인식의 결과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에 어느 정도의 누적적 영향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동안의 실적과 함께 IFRS9의 시행에 따른 시중은행들의 장래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경제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본 연구는 은행업의 중요한 경영환경의 변화인 IFRS9의 시행 이후 비교적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IFRS9의 시행에 따른 시중은행들의 재무상태·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의 실적과 전

1) IFRS9의 시행 배경 등에 대한 이번 장의 내용은 신유정과 이영한(2020)을 참고하였다.

2) IFRS9의 대손충당금의 적시 손실 인식을 통해 IAS39에 비해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게 되면 대손충당금과 이에 대응하는 대손상각비를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부합하게 된다.

3) IFRS9의 시행이 금융자산의 재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시인식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경영실적에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연구들에서 이것을 특별히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경영실적에 미칠 수 있는 “기타의 경로를 통한” 가능한 영향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망을 IFRS9의 세부적 규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문헌분석과 함께 시행효과에 대한 통계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즉,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의 측면을 중심으로 IFRS9의 도입을 통한 2021년까지의 시행실적 및 장래의 예상효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 4대 시중은행의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IFRS9의 시행에 의해 시중은행들의 금융자산의 꾸준한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지만, 다시 원래의 추세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IAS39 → IFRS9의 전환으로 인해 4대 시중은행의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이 1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IFRS9의 시행이 시중은행들의 금융자산 계상액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금융자산의 감소액은 모두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전환시점인 2017년말에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금융자산 금액의 0.49%에서 0.57%로 증가했고, 이러한 결과가 IFRS9의 시행 직후인 2018년에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에 대한 일시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 중 손실충당금 비율은 자산관리의 효율화 노력 등을 반영해서 2015년의 0.74%에서 2021년의 0.44%로 장기적인 하락추세를 보였는데, 이와 함께 2017년말의 IFRS9 전환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을 반영해서 일시적으로 급등했고(0.50% → 0.60%), 2020년의 일부 은행들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동(同)추세에 대한 일시적 반전이 발생한(0.40% → 0.46%)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IFRS9의 적용 이후 누적적인 일시적 차이를 반영해서 4대 시중은행의 법인세 부담액은 과거 4년간(2018년-2021년) 1,156억원 감소한 반면 장래 5년간은(2022년-2026년) 1,678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서 2018년부터 IFRS9의 적용으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초기에는 손실충당금 비율이 커져서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 반면 기간 경과에 따라 일시적 효과의 반전으로 인한 영향으로 장래에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시중은행에 대한 장래의 경영실적 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I. 관련 규정·법령 및 예상 영향 등의 검토

1. 은행업에 대한 IFRS9의 주요 내용⁴⁾

가. 금융상품의 분류기준의 단순화

IFRS9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금융자산 분류와 측정 범주의 단순화이다. IAS39에서는 금융자산을 정의, 거래 형태 및 주관적 보유목적 등에 따라 ① 단기매매금융자산(held-for-trading) ② 매도가능금융자산(available-for-sale) ③ 만기보유금융자산(held-to-maturity) 및 ④ 대여금 및 수취채권(loans and receivables)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중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⁵⁾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정의되어서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금융상품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고,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활성시장에서 가격 공시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준이 다소 불명확해서 사모사채 및 MMF 등의 일부 금융상품의 분류에 일관성 결여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금융자산의 평가와 관련해서 단기매매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면서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비해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면서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모두 상각후원가(AC, Amortized Cost)로⁶⁾ 측정하였다.

이에 반해 IFRS9는 유가증권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구분해서 정의하지 않고, ①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및 ② 금융자산의 계약상 원리금 지급 현금흐름 특성 평가(SPPI test)의 기준에 의해 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및 ③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으로 보다 단순하게 분류하였다.

여기서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별상품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는 무관하고, 금융자산 투자의 성과 평가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금융

4) 이번 절의 내용은 신유정과 이영한(2020) 및 조영현과 이해은(2018)을 참고하였다.

5) 지속적으로 가격 결정 정보를 제공하기 충분할 정도의 빈도 및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거래소, 딜러, 중개인, 산업집단, 가격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구를 통해 공시가격을 용이하게 정기적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간에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내는 시장(은행회계해설(상), 2018)

6) 최초 인식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누계액을 가감하며, 추가적으로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을 인식할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자산의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경영진에 대한 보상 방법 및 과거 매매패턴 등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며 ①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②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및 ③ 매도 및 기타의 사업모형으로 구분된다.

계약상 원리금 지급 현금흐름 특성 평가(SPPI⁷⁾ test)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SPPI test를 충족하였다고 표현한다. 여기서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이고, 이자의 요소로 인정되는 것은 화폐의 시간가치,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기본적인 대여에 따른 위험과⁸⁾ 원가⁹⁾, 일정기간 보유에 따른 서비스원가 및 관리원가 및 이윤이다¹⁰⁾.

사업모형과 계약상 원리금 지급 현금흐름의 특성 평가를 근거로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사업모형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계약상 원리금 지급 현금흐름 특성 평가(SPPI test)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으로 분류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또는 매도 사업모형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계약상 원리금 지급 현금흐름 특성 평가(SPPI test)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하며, 그 밖의 경우는 모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는 IAS39의 보유목적 및 활성시장 등의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분류기준에 비해 객관적이고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IFRS9의 금융자산(채무증권) 분류기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계약상 원리금 지급 현금흐름 특성 평가(SPPI test)	
	충족 ¹¹⁾	불충족 ¹²⁾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	AC ^{*A}	FVPL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FVOCI ^{*A}	FVPL
매도 및 기타	FVPL	FVPL

* 자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4.1 및 은행회계해설(상)(2018)¹³⁾

*^A 회계불일치 해소 목적인 경우에는 FVPL로 지정 가능

- 7)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8) 유동성 위험 등
 9) 관리원가 등
 1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B4.1.7-B4.1.7A
 11) 일반대출채권 및 일반채무증권 등
 12) 풋가능금융상품 및 복합금융상품 등
 13) 금융자산의 분류 Flow Chart를 정리한 것이다.

이 밖에 IFRS9에서 파생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한다. 즉, IAS39에서는 복합금융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해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에 반해 IFRS9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계약 전체에 금융자산 분류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이러한 복합금융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특성으로 계약상 원리금 지급 현금흐름의 특성 평가(SPPI test)를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금융자산에 대한 복합금융상품의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 판단 절차 및 하나의 상품 매입시 거래금액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복잡한 분리 회계처리는 없어지게 되었다¹⁴⁾.

또한, IFRS9에서 지분상품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상 원리금 지급 현금흐름 특성 평가(SPPI test)를 충족하지 못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경우에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¹⁵⁾¹⁶⁾. 단, 지분상품에 대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의 분류 선택 시에는 투자원금의 일부 회수가 아닌 것이 명백한 배당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지분상품의 처분으로 인한 실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고, 자본 항목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의 취소불가능한 선택이 가능한 지분상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금융상품 : 표시)의 지분상품 정의에 따른다. 다만, IASB는 특정 상황에서 풋가능금융상품이¹⁷⁾ 발행자 입장에서 자본으로 분류되는 반면 그러한 상품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풋가능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타포괄손익 표시 선택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고¹⁸⁾, 채무증권의 일반적 분류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한다. 즉, 대부분의 수익증권과 출자금에 풋가능금융상품에 해당하고, 풋가능금융상품은 계약상 원리금 지급 현금흐름 특성 평가

14) 금융부채에 대한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처리는 IAS39와 동일하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4.3.3).

15) 특정 투자가 투자가치의 증가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은 기업의 성과를 잘 나타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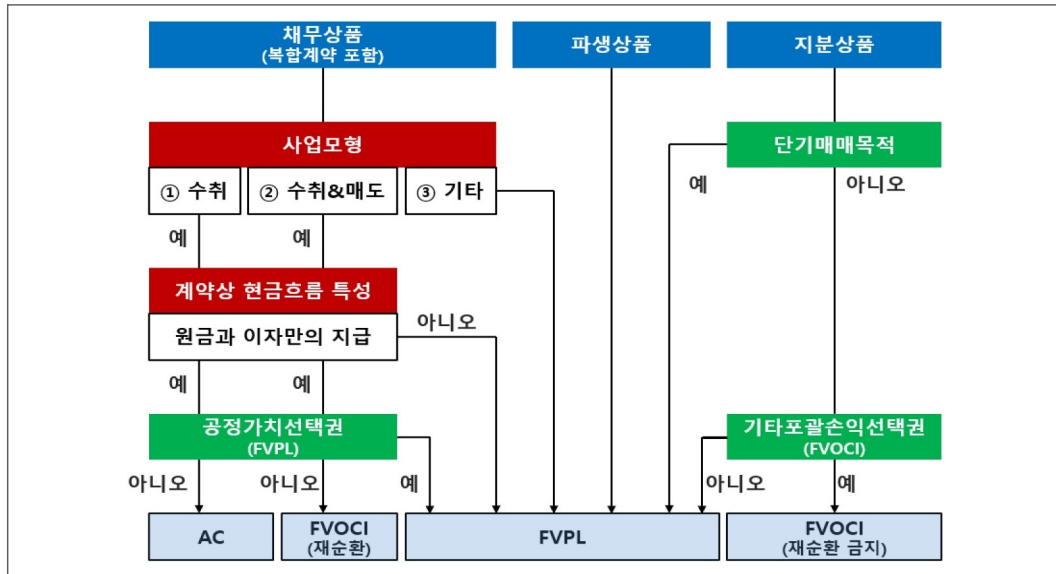
1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BC5.21－BC5.22

17)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일어나거나 금융상품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발행자에게 자동으로 환매되는 금융상품(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2호 16A－16D)

1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BC5.21

(SPPI test)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 분류된다.

〈그림 1〉 금융상품(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분류와 측정 흐름도



*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2016)을 정리한 조영현과 이해은(2018)

또한, IFRS9의 금융부채의 분류는 IAS39의 금융부채의 분류기준과 동일하다. 즉, IAS39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FVPL)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AC)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회계불일치 해소, 공정가치 기준성과 관리 집합 및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 등의 사유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경우에 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후에 실현시 자본 항목으로 대체한다.

추가적으로, IAS39에서는 보유 의도나 보유능력 변화 등에 따라 제한적 상황에서 금융상품의 재분류가 가능했고, 만기보유금융자산은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매각 또는 재분류시 매각연도 및 이후 2년 동안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를 금지하는 벌칙 조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IASB는 IFRS9의 재분류 금지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비슷한 금융상품의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 재분류를 허용하였다. 단, 사업모형의 변경은 매우 드물고, 유의적이며, 변경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¹⁹⁾. 또한, 현금흐름이

1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BC4.113－BC4.116

사업모형을 평가했던 시점의 예상과 다르게 실현되더라도 특정 시기에 매도 빈도나 매도금액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한 매도를 사업모형의 변경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사업모형에서 분류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로 인한 벌칙 조항은 없다²⁰⁾.

나. 손상²¹⁾ 인식의 적시성 강화

IAS39에서는 보고기간 말 채무증권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징후가 있는 경우 매도가능증권은 기타포괄손실 인식금액을 당기손실로 대체하여 공정가치 기준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했고, 만기보유증권은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금액을 손상차손 인식금액으로 해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른 손상차손 인식기준의 차이가 있었다.

IFRS9는 유가증권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구분해서 정의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된 채무증권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으로 분류된 채무증권에 대해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기대신용손실 대손충당금을 매 결산일에 인식하게 하여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의 인식범위가 확대되었고, 인식기준이 일원화되었다.

IAS39의 발생손실은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해서 해당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고,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경기침체기에 대량의 손상사건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고, 경기 순응성을 조장할 위험이 있었다.

IFRS9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융상품의 기대 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인 기대신용손실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즉,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해서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한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하도록 규정하였다²²⁾.

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B4.1.3B

21)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하여 회수할 금액을 초과하면 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표시된 것인데, 이러한 경우를 자산이 손상되었다고(impairment)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제5.5절(손상)

구체적으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의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은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이에 반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의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고²³⁾,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데, 이것은 공정가치로 평가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 채무증권의 장부금액에는 이미 신용위험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손상 인식과 관련한 이상의 내용은 IFRS9의 주요한 시행 내용 중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대손충당금²⁴⁾ 적시 인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이를 다시 정리하면 종전의 IAS39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는 반면 IFRS9에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으로 측정하는 채무증권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의해 손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IFRS9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항상 인식하도록 하고, 매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의 변동을 갱신하여 반영하므로 IAS39에 비해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게 된다. 즉, 2018년부터 회계목적 충당금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이 IAS39의 발생손실모형에서 IFRS9의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되었는데, 발생손실모형은 객관적 손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충당금을 인식함에 따라 적립시기 지연 및 적립규모 축소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반면 기대신용손실모형은 손상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예상되는 손실을 감안해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다²⁵⁾.

- 23) FVOCI 채무증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의 회계처리 사례는 아래와 같다. 즉, 취득금액이 50이고, 채무증권의 공정가치가 60(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이 반영)이며,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이 5인 경우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신유정 · 이영한 2020).

(취득)	FVOCI채무증권	50	현금	50
(공정가치평가)	FVOCI채무증권	10	기타포괄손익	10
(기대신용손실인식)	대손상각비	5	기타포괄손익	5

- 24) 대손충당금(*Loan loss provisions*)은 은행이 대출 등의 보유자산에 내재한 손실발생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회계목적(*account*) 충당금은 주주 등 시장참가자에 대한 공시 목적으로 IASB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되어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이와 구분해서 감독목적(*supervision*) 충당금은 은행 건전성의 확보 목적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 산출 등에 활용되는데, BCBS는 회계목적 충당금과 감독목적 충당금을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할 경우 동(同)차액을 감안하여 규제자본을 조정(*adjustment*)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5) IFRS9은 손상 인식시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도록 하는데, 미래전망 정보는 과도한 비용 및 노력 없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즉, IFRS9은 미래전망적(*forward-looking*) 손상모형으로 신용손실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종전 회계기준에 의한 경기순응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IFRS9에서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을 3단계(Stage 1·2·3)로 구분해서 인식하고, 신용위험의 증가에 따라 12개월 또는 전체 기간의 예상신용손실(발생가능한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의 손실 금액을 발생 확률로 가중평균해서 산출한 금액)을 추정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했고, 신용위험에 따라 이자수익 인식대상 자산의 금액을 차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용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Stage 1·2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이자수익을 계산하는 반면 신용손상이 발생한 Stage 3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차감 후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이자수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IAS39와 다르게 정상인 Stage 1의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였다²⁶⁾.

〈표 2〉 IFRS9의 손상 인식

IAS39	IFRS9		대손충당금	이자수익
정상	Stage 1	정상 (보고일 현재 낮은 신용위험)	향후 1년간 예상손실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금액×유효이자율
손상	Stage 2	중대한 신용위험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²⁷⁾)	전체 기간 예상손실	
	Stage 3	손상 (신용손상 발생 ²⁸⁾)		대손충당금 차감 후 장부금액×유효이자율

* 자료 : 2015.12.16.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년부터 수익과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이 확 바뀝니다.)

지분상품의 손상인식과 관련해서 IAS39에서는 지분증권에 완전자본잠식 등의 구체적 질적 손상의 징후가 없더라도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았다²⁹⁾. 그러나, 지속적 하락

26) 손상 인식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Stage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느냐 인데, 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2016)은 아래의 예를 제시하였다. 즉, LDP(low default portfolio)는 부도사건이 전혀 없거나 다년에 걸쳐 매우 드문 부도사건이 발생하는 포트폴리오인데, 전체적으로 신용도가 좋고 신용위험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말하고, LDP 조건을 충족할 경우 Stage 1로 분류한다. LDP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약관대출의 경우에 장부가액이 해약환급금보다 작거나 같으면 Stage 1로 분류하고, 해약환급금보다 크면 Stage 3으로 분류한다. 부도의 인식은 연체 90일 초과 및 IAS39의 손상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연체일수가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Stage 2로 분류하는데,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유의적 신용위험의 증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27) 단, 여전히 “투자등급”인 경우는 제외한다.

28) 취득시부터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포함한다.

2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61

의 기간 및 유의적 하락의 기준은 기준서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³⁰⁾.

IFRS9에서 지분증권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 분류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의 분류는 공정가치 변동이 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서 별도로 손상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단,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최소불가능한 선택을 한 경우에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당기손익 재순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상을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지분증권의 분류 및 회계처리의 변경과 함께 매도가능 지분증권의 복잡한 손상 인식기준은 없어지게 되었다³¹⁾.

2. IFRS9의 시행이 은행 손익에 미치는 예상 영향 및 선행연구

앞선 절에서 정리한 IFRS9의 시행에 의한 은행 회계처리의 변화와 관련해서 동(同)시행이 은행 손익에 미칠 것으로 시행 초기에 예상했던 영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³²⁾.

먼저, 2018년부터 시행된 IFRS9의 도입으로 대손충당금의 산출모형과 함께 금융자산의 분류·특정 체계 및 위험회피회계 등이 변경되었는데,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이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금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이 변경되어서 장래의 대손충당금 계상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³³⁾.

구체적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을 계상할 때 IAS39는 실제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반면 IFRS9은 향후 예상되는 손실을 고려해서 손실 징후가 있더라도 이를 회계상으로 인식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자산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에 따라

30) 따라서, IFRS의 도입 초기에 기업들은 유의적 하락 수준 및 지속 하락의 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시행했는데, IFRS9의 도입 직전에는 일반적으로 시장성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하락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지속적 하락으로 보고,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대비 30%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유의적 하락으로 보아 매도가능지분증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손상 검토를 위해서는 보고기간 말 취득원가 대비 공정가치의 하락율 검토 외에 보고기간 말 기준 과거 6개월의 시장성 지분증권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의 일별 비교 등과 같은 복잡한 손상검토 절차가 필요했다.

31)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손상에서는 여전히 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손상의 객관적 증거가 된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41C).

32) 예상 영향에 대한 이하의 내용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8)를 참고하였다.

33) 2018.9.4.자 파이낸셜뉴스 기사(IFRS 도입 첫째, 은행권 대손충당금 1조4,000억원 늘어)는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에 의하면 10개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2017년 12월말의 10조7,637억원에서 2018년 3월말의 12조1,693억원으로 1조4,056억원 증가했고, 특히 IFRS 적용 전보다 고정이하 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의 적립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하는 방식으로 손실 인식의 기준이 강화되고, 전체 보유기간(lifetime)을 기준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손실 예상액도 증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은 시중은행의 순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IFRS9의 시행 이전에 임의적립금인 대손준비금을 충분히 적립한 은행들은 이익잉여금의 대체를 통해 대손충당금의 추가 적립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함께 금융자산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어서 비이자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은행이 보유하는 유가증권 중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단기매매 목적이 아닌 매도가능 성격의 지분증권은 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이 모두 당기 손익 대신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한 매도가능 유가증권의 선별적 처분을 통한 이익 계상이 어려워져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IFRS9의 적용으로 시중은행의 순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대손상각비 및 비이자이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IFRS9 적용 시점의 금융기관의 전환효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해외 선행연구들은 규제자본 및 규제기관의 역할 및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의 산출과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Halep(2015)는 IFRS9의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2008년의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한 반면 유럽에서의 은행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 은행과의 경쟁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ebhardt(2016)는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하락한 그리스 정부 채권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IFRS9의 적용 이후에도 신용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전까지는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이 공정가치 손실과 비교해서 여전히 지연 인식되고, 작게 적립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Sultanoglu(2018)는 IFRS9의 도입 사전 영향 분석에서 유럽 은행들의 기대신용손실 대손충당금은 평균 13%—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BIS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0.35%p—0.50%p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터키은행은 이와 반대로 대손충당금이 4.1% 감소하면서 BIS 자기자본비율이 0.21%p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Beerbaum(2015)은 새로운 대체 손상모델은 금융기관의 은행 시스템 및 프로세스와 함께 손익 관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모든 회사가 상이한 모델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기관과 투자자들의 회계정보 비교·분석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더 많은 회계실무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였다. Novotny—Farkas(2016)는 IFRS9의 도입으로 기대신용손실 대손충당금은 은행 규제자본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추정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에 유의적 여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나친 개입은 재무보고에

감독상 편견이 반영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준서의 변경에 대한 효익은 이에 대한 일관된 적용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하였다.

IFRS9의 적용과 무관하게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의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로 조윤희(2010)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은행업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대손충당금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결산조정의 세무조정 방식은 경영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조세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조정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수성·고윤성(2011)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이 예상손실에서 발생손실로 변화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의 대규모 환입으로 인한 세금부담으로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진영(2011)은 주요 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변동 내역을 201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분석했고,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손충당금의 설정금액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변동되고 재무안정성 및 법인세 부담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을 회계처리에 의존적인 결산조정이 아닌 회계처리에 독립적인 신고조정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3.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실 인식과 관련한 세법 규정의 분석

IFRS9의 회계상 시행효과와 별도로 시중은행의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에 영향을 미쳐서 과세대상 소득과 법인세 부담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법인세 부담액은 회계상 시행효과와는 별도로 시중은행의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FRS9의 세무상 시행효과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 별도로 분석하는 IFRS9의 세무상 시행효과와 관련해서 이러한 분석과 관련한 법령 및 유권해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인 대손충당금의 추정을 허용할 경우 과세형평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은 총액법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는데³⁴⁾, 일반업종 법인의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의 손금산입한도액은 <표 3>과 같다.

34)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합병(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분할법인)이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대손충당금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표 3〉 일반업종 법인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text{손금산입한도액} = \text{당기말 설정대상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합계액}^{35)} \times \text{대손율}^{*A}$$

* 자료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A 대손율 = MAX(①, ②)

① 1%

②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B}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세무상 채권잔액³⁶⁾

*^B 대손요건을 충족한 대손금에 한정함.

여기서 금융회사 등은 <표 4>와 같이 <표 3>의 일반업종 법인의 손금산입한도액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으로 한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에 따르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법규법인2012-40, 2012.3.8.).

〈표 4〉 세법상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text{손금산입한도액} = \text{MAX}(\text{①}, \text{②}, \text{③})$$

①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② 기말채권잔액 × 1%

③ 기말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 자료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표 4>의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①)과 관련해서는 은행업감독규정³⁷⁾ 제29조 제1항은 <표 5>와 같이 채권의 종류 및 건전성분류별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다.

35)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또한, 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 계산시에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순액으로 가지급금적수를 계산한다(다만, 그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6) 회계상 채권잔액에 대손금의 세무조정을 반영한 것이다(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까지 반영할 경우에는 순환오류에 빠지게 된다.).

3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27호, 2017.8.23.

〈표 5〉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³⁸⁾³⁹⁾⁴⁰⁾

건전성 분류	채권의 종류			
	가계자금대출금 (동항 제2호)	카드대출자산 ⁴¹⁾⁴²⁾ (제3호 가목)	기타카드자산 (제3호 나목)	대출채권 등 기타 채권(제1호) ⁴³⁾
정상	1% 이상	2.5% 이상	1.1% 이상	0.85% 이상 ⁴⁴⁾
요주의	10% 이상	50% 이상	40% 이상	7% 이상
고정	20% 이상	65% 이상	60% 이상	20% 이상 ⁴⁵⁾
회수의문	55% 이상	75% 이상	75% 이상	50% 이상 ⁴⁶⁾
추정손실	100%	100%	100%	100% ⁴⁷⁾

* 자료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 38)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국제결제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으로서 각 호에 따른 합계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내부등급법상 예상손실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 적용되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예상손실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 39) <표 5>와 별도로 지급보증(배서어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3-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동항 제4호).
- 40) <표 5>와 별도로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기업자금 미사용약정은 제1호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가계자금 미사용약정은 제2호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금액으로 하며, 신용카드채권 미사용약정은 제3호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3-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동항 제5호).
- 41) 카드자산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말하고,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카드론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카드론 자산에 대하여는 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42) 카드대출자산(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리불빙자산을 제외한 채권) 및 리불빙자산(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 43) 은행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의 대출채권, 금융리스채권, 금융리스선급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
- 44) 다만,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F), 도매 및 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H), 부동산 및 임대업(L)은 0.9% 이상
- 45)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에 따라 은행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자산(이하 “우선변제자산”)은 10% 이상
- 46) 다만, 우선변제자산은 25% 이상
- 47) 다만, 우선변제자산은 50% 이상

III. 대손충당금 손익 인식과 관련한 IFRS9의 시행효과의 분석

1. IFRS9의 회계상 시행효과의 분석

2018년의 IFRS9의 시행 이후에 금융상품 분류기준의 단순화 및 손상 인식의 적시성 강화가 은행업의 회계처리 및 손실인식에 미친 중요한 영향은 최초 시행시점(2017년말 및 2018년초)의 전환효과와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연도별(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순증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4대 시중은행을⁴⁸⁾ 대상으로 이러한 회계상 전환효과 및 순증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4대 시중은행의 개별적 시행효과를 종합해서, 은행업에서 발생한 IFRS9의 전체적 영향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로 한다⁴⁹⁾.

먼저, 2015년 이후에 IFRS9의 시행을 전후한 IAS39(2015년-2017년) 및 IFRS9의(2018년-2021년) 분류 및 측정에 의한 4대 시중은행의 연도별 금융자산의 총액 및 금융자산의 범주별 금액 비율은 <표 6> 및 <표 7>과 같다.

<표 6> 4대 시중은행의 연도별 금융자산 총액(2015년-2021년, 연도말 기준)
(단위 : 십억원)

범주	IAS39 적용			범주	IFRS9 적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단기매매	27,385	33,415	34,265	FVPL	68,704	42,649	50,229	64,195	65,929
매도가능	97,808	113,361	124,250	FVOCI	89,662	115,258	142,626	145,149	158,191
만기보유	40,660	38,098	46,470	AC	1,104,816	1,146,311	1,214,582	1,328,705	1,452,364
대여금등	965,971	1,016,969	1,058,581						
계	1,131,824	1,201,843	1,263,565	계	1,263,181	1,304,218	1,407,437	1,538,048	1,676,483
연간증가율 ⁵⁰⁾		6.19%	5.14%		5.10%	3.25%	7.91%	9.28%	9.00%
기간증가율			5.66%						7.33%
전체증가율									6.77%

* 자료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48) 2021년말의 총자산이 400조원보다 크거나 근접한 KB국민은행(465조원), 신한은행(433조원), KEB하나은행(412조원) 및 우리은행(397조원)을 선정했는데, 총자산을 기준으로 이들 은행이 전체 시중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말을 기준으로 55.4%이다.

49) 개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지면관계상 생략하였다.

50) IAS39 및 IFRS9에 의한 2017년 기말잔액의 연간증가율은 IAS39에 의한 2016년의 기말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표 7> 4대 시중은행들의 연도별 금융자산 범주별 금액 비율(2015년-2021년, 연도말 기준)

범주	IAS39 적용			범주	IFRS9 적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단기매매	2.4%	2.8%	2.7%	FVPL	5.4%	3.3%	3.6%	4.2%	3.9%
매도가능	8.6%	9.4%	9.8%	FVOCI	7.1%	8.8%	10.1%	9.4%	9.4%
만기보유	3.6%	3.2%	3.7%	AC	87.5%	87.9%	86.3%	86.4%	86.6%
대여금등	85.3%	84.6%	83.8%						

* 자료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연도별 사업보고서

<표 6>과 같이 4대 시중은행의 2015년-2021년의 연평균 금융자산 증가율은 6.77%인데⁵¹⁾, 이것을 IAS39 및 IFRS9의 적용시기로 구분하면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66%⁵²⁾ 및 7.33%로⁵³⁾ 계산된다. 또한, IFRS9의 최초 적용을 전후한 2017년 및 2018년의 연간 증가율이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비교적 낮은 반면 다른 연도에는 연평균 증가율과 유사하거나 충분히 높고, 2017년말의 전환을 통해 금융자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비율이 0.03%(3,840억원)로⁵⁴⁾ 비교적 작기 때문에 IFRS9의 시행에 의해 시중은행들의 금융자산의 꾸준한 증가 추세가 2개 연도에 걸쳐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지만, 다시 원래의 추세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IFRS9의 시행이 시중은행들의 금융자산 계상액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표 7>과 같이 IFRS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설정대상이 IAS39 적용시기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서 IFRS 적용시기의 FVOCI 및 AC로 조정되면서 설정대상의 구성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IFRS9이 시행된 2018년 이후에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아닌 FVPL의 구성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대 시중은행의 IAS39 → IFRS9의 전환에 의한 금융자산 및 손실충당금의 세부적 전환내역은 각각 <표 8> 및 <표 9>와 같다.

먼저, <표 8>과 같이 IAS39에 의한 4대 시중은행의 2017년말의 금융자산은 1,263조5,650억원인데, 이것을 IFRS9로 전환할 경우에는 1,263조1,810억원으로 0.03%(3,84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IFRS9의 시행이 시중은행들의 금융자산 계상액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IAS39에 의한 개별 금융자산 항목들의 IFRS9의 시행으로 인한 증감비율은 전체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이들 중에서도 직접적인 시가 변동의 반영대상인 단기매매금융자산(0.06%)과 함께 가장 규모가 크고 은행의 사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대

51) $(1,676,483\text{십억원} \div 1,131,824\text{십억원})^{(1 \div 6)} - 1$

52) $(1,263,565\text{십억원} \div 1,131,824\text{십억원})^{(1 \div 2)} - 1$

53) $(1,676,483\text{십억원} \div 1,263,181\text{십억원})^{(1 \div 4)} - 1$

54) $(1,263,181\text{십억원} \div 1,263,565\text{십억원}) - 1$

출채권(0.04%)은 보수적 평가의 필요성이 반영되어서 다른 항목들에 비해 감소비율이 비교적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9>와 같이 IAS39에 의한 4대 시중은행의 2017년말의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은 6조2,141억원인데, 이것을 IFRS9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7조2,191억원으로 16.2%(1조5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8>에서 확인한 IAS39 → IFRS9의 전환에 의한 금융자산의 감소액(3,840억원)은 모두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IAS39에 의한 개별 금융자산 항목들의 대손충당금의 IFRS9의 시행으로 인한 증가 비율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이들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은행의 사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대출채권(15.4%)의 증가비율은 평균적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4대 시중은행의 금융자산 전환내역(IAS39 → IFRS9, 2017년말)

(단위 : 십억원)		IAS39	IFRS9			
			FVPL	FVOCI	AC	계
단기매매금융자산		34,265	34,246			34,246
매도가능금융자산		124,250	31,434	89,662	3,176	124,271
만기보유금융자산	채무증권	46,470	212		46,253	46,466
대여금 및 수취채권	예치금	61,428	1,908		59,518	61,426
	대출채권	962,340	904		961,060	961,964
	기타금융자산	34,814			34,808	34,808
	총계	1,058,581	2,812	0	1,055,386	1,058,198
합계		1,263,565	68,704	89,662	1,104,816	1,263,181

* 자료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2018년 사업보고서

<표 9> 4대 시중은행의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전환내역(IAS39 → IFRS9, 2017년말)

(단위 : 백만원)		IAS39	IFRS9		
			FVOCI	AC	계
매도가능금융자산		0	32,062	176	32,238
만기보유금융자산	채무증권	0	0	15,388	15,388
대여금 및 수취채권	예치금	16,504	0	19,673	19,673
	대출채권	6,053,322	0	6,995,486	6,995,486
	기타금융자산	144,250	0	156,268	156,268
	총계	6,214,076	0	7,171,427	7,171,427
합계		6,214,076	32,062	7,186,991	7,219,053

* 자료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2018년 사업보고서

<표 9>를 정리한 <표 10>과 같이 4대 시중은행의 2017년말의 전환 당시 IAS39에 의한 손실충당금은 금융자산 금액의 0.49%인 반면 IFRS9에 의한 손실충당금은 금융자산의 0.57%로 0.08%P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 금융자산 중에서 손실충당금과는 무관한 범주인 IAS39의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IFRS9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IAS39에 의한 손실충당금은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의 0.50%인 반면 IFRS9에 의한 손실충당금은 동(同)금융자산의 0.60%로 0.10%P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환 당시 IAS39에 의한 손실충당금은 전액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서 발생했는데, 대여금 및 수취채권 금액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비율은 0.58%인 반면 동(同)비율을 IFRS9에서 0.67%로 계산하면 0.09%P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환 당시 IFRS9에 의한 손실충당금은 FVOCI 및 AC에서 발생했는데, FVOCI 및 AC 금액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비율은 각각 0.04% 및 0.65%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손실충당금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포함되는 대출채권에서 발생했는데, 전환 당시 IAS39 및 IFRS9에 의한 대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비율은 각각 0.63% 및 0.72%로 0.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및 <표 10>을 종합하면 IAS39 → IFRS9의 전환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전환시점인 2017년말에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금융자산의 총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설정비율이 증가했고⁵⁵⁾, 이러한 결과가 IFRS9의 시행 직후인 2018년에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에 대한 일시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0> 4대 시중은행의 IAS39 → IFRS9 전환시 손실충당금의 비율 비교(2017년말)⁵⁶⁾

구 분	IAS39	IFRS9	차이
금융자산 중 비율	0.49%	0.57%	0.08%P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 중 비율	0.50%	0.60% ^{*A}	0.10%P
대여금 및 수취채권 중 비율	0.58%	0.67%	0.09%P
대출채권 중 비율	0.63%	0.72%	0.10%P

* 자료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2018년 사업보고서를 이용해서 저자 작성

*^A FVOCI 및 AC에 대해 각각 0.04% 및 0.65%

다음으로, 4대 시중은행에 대해 전체 분석대상 기간(2015년-2021년)에 걸친 연도별 및 금융자산 범주별 손실충당금 비율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즉, 4대 시중은행의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비율은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러

55) 단, 이것은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에 대한 다른 요인들의 유의적 영향이 없는 것을 가정한 경우의 제한적 분석결과이다.

56) 개별 4대 시중은행의 결과를 가중평균한 것이다.

한 하락 추세에서도 2017년말의 IAS39 → IFRS9 전환을 통해 동(同)비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4대 시중은행의 연도별 및 금융자산 범주별 손실충당금 비율(2015년-2021년)⁵⁷⁾

구분	IAS39 적용			IFRS9 적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현금 및 예치금	0.03%	0.03%	0.03%	0.03%	0.04%	0.03%	0.02%	0.02%
대출채권	0.85%	0.70%	0.63%	0.72%	0.61%	0.49%	0.55%	0.51%
기타금융자산	1.92%	0.69%	0.41%	0.45%	0.31%	0.23%	0.30%	0.55%
투자금융자산	0.00%	0.00%	0.00%	0.03%	0.02%	0.02%	0.03%	0.04%
계 ^{*A}	0.74%	0.57%	0.50%	0.60%	0.51%	0.40%	0.46%	0.44%

* 자료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이용해서 저자 작성

^{*A} <표 10>의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 중 비율”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함.

<표 11>과 관련해서는 특히 4대 시중은행의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비율이 분석대상 기간인 2015년-2021년에 자산관리의 효율화 노력 등을 반영해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이와 함께 2017년말의 IAS39 → IFRS9의 전환에 의해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을 반영해서 일시적으로 급등했고, 2020년의 일부 은행들의 특수한 상황(누적된 과소 대손전입액 보전 및 사업결합 등)으로 인해 동(同)추세에 대한 일시적 반전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⁵⁸⁾.

여기서 2017년말의 IAS39 → IFRS9의 전환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은 대손충당금의 인식시점과 관련한 일시적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간 경과에 의해 반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 11>에는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 이후에 매년 새롭게 반영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도 역시 기간 경과에 의해 반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이후에 연도별로 발생하는 손실충당금 비율의 일시적 차이는 2017년말과 같이 동

57) 개별 4대 시중은행의 결과를 가중평균한 것이다.

58) KB국민은행은 IFRS가 적용된 2018년-2020년에는 전체 대출채권 중에서 Stage간 이동을 통해 정상채권(Stage1)이 감소하면서 손상채권(Stage2·3)이 증가한 반면 대손충당금은 손상채권이 감소하면서 정상채권이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2018년과 2019년에는 대손상각액에 비해 대손전입액이 더 작아져서 대출채권 중 손실충당금의 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2020년에는 그 동안의 누적된 과소 대손전입액을 보전하기 위해 대손상각액과 유사한 규모의 대손전입액이 설정되었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일시적인 대손충당금의 증가분까지 발생해서 동(同)비율이 2017년말의 IFRS9의 전환 시점의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2018년과 2019년에 동(同)비율이 계속 감소한 후에 2020년에는 그 동안의 누적된 과소 대손전입액을 보전하기 위해 대손상각액보다 큰 규모의 대손전입액이 설정되어서 동(同)비율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同)비율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함께 과다하게 계상한 손실충당금을 감액시켜서 효과가 반대인 경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손충당금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추정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을 반영한 IFRS9의 시행 이전인 IAS39의 적용 시기의 손실충당금 비율을 이용해서 IFRS9의 시행과 무관한 연도별 동(同)비율의 추정치(r)를 비교적 단순한 직각쌍곡선의 형태로 추정하면 식(1)과 같다.

$$r=0.3639\%+0.4432\%\times(t+0.1869)^{-1} \quad (1)$$

단, t는 2015년=1, 2016년=2, 2017년=3 ...의 값을 부여한 기간 변수

또한, 2017년말의 IAS39 → IFRS9의 전환에 의한 손실충당금 비율의 증가와 함께 2018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 차이가 기간 경과에 의해 반전될 경우에는 이러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기간 및 방식에 대한 추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대손충당금과 유사하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재고자산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동(同)평가 이익을 일시에 과세하는 대신 5년간 균등분할해서 과세하는 것을⁵⁹⁾ 참고해서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후에 4년간 균등 반전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식(1)과 같이 추정한 IFRS9의 시행과 무관한 금융자산의 연도별 손실충당금 비율(이하 “고유비율”)과 함께 2017년말 이후 매년 발생한 대손충당금 적시인식의 일시적 차이가 당해연도와 함께 4년간 균등 반전을 통해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 비율(이하 “적시인식비율”)을 구분해서 <표 11>의 분석대상 기간(2015년-2021년)의 연도별 손실충당금 비율을 분해하면 <표 12>와 같고⁶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장래 5년간(2022년-2027년)의 손실충당금 비율을 요소별로 추정하면 <표 13>과 같다.

<표 12> 4대 시중은행의 손실충당금 비율의 분해(2015년-2021년)

구분	IAS39 적용			IFRS9 적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고유비율	0.74%	0.57%	0.50%	0.47%	0.45%	0.44%	0.43%
적시인식비율				0.04%	-0.05%	0.02%	0.02%
계 ^{*A}	0.74%	0.57%	0.50%	0.51%	0.40%	0.46%	0.44%

* 자료 : 저자 작성

*^A <표 11>의 “계”와 동일함.

59) 법인세법 제42조의2

60) <표 12>와 같이 시중은행의 연도별 손실충당금 비율을 고유비율과 적시인식비율로 구분하는 것은 손실충당금 비율의 기간별 추세를 엄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데 필요한 표본 규모에 미달하는 본 연구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택한 예외적 연구방법이다.

〈표 13〉 4대 시중은행의 손실충당금 요소별 추정(2022년—2026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고유비율	0.42%	0.41%	0.41%	0.40%	0.40%
적시인식비율 ⁶¹⁾	0.00%	0.00%	-0.02%	-0.01%	-0.01%
계	0.42%	0.41%	0.39%	0.39%	0.39%

* 자료 : 저자 작성

제한적 가정들을 이용해서 <표 12> 및 <표 13>과 같이 추정한 4대 시중은행들의 IFRS9의 전환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의 영향은 손실충당금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대하여 IFRS9의 적용 초기에는 적시인식을 통한 일시적 차이가 동(同)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시중은행들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에 유의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래에는 이러한 효과가 축소되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 노력 등을 반영해서 동(同)비율이 장기적 추세에 근접함으로써 시중은행들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⁶²⁾.

2. IFRS9의 세무상 시행효과의 분석

이번 절에서는 앞선 절에서 분석한 IFRS9의 회계상 시행효과와 별도로 시중은행의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표 4>의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에 영향을 미쳐서 과세대상 소득과 법인세 부담액에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앞선 절에서 분석한 IFRS9의 회계상 시행효과는 개별 은행들의 불완전하고 비밀관적인 공시 내용으로 인해 분석상 한계가 있지만, 세무상 시행효과는 대부분의 법인세 신고내용이 비공개 대상이라서 구체적인 분석의 어려움이 더욱 크기 때문에 앞선 절의 분석내용에 별도의 가정들을 추가해서 동(同)시행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즉, <표 4>의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과 관련해서 “기말채권잔액”은 세무

61) 2022년 이후의 일시적 차이는 2017년말의 일시적 차이와 2021년의 일시적 차이를 이용해서 계산한 일시적 차이의 연평균 증가율(-13.6%)이 2022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하였다.

62) 김정우와 나영(2019)과 같이 IFRS9의 기대신용손실모형은 선행적으로 손실을 인식해서 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경기침체시 은행의 여신축소 경향인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려는 목표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이번 절에서 수행한 2018년 이후의 손실충당금 비율의 분석은 동(同)비율의 장기적 추세와 함께 2017년말의 IAS39 → IFRS9의 전환에 의한 일시적 차이만 고려한 반면 2018년 이후의 경기동향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IFRS9의 회계상 시행효과”의 해석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상 잔액이지만 개별 채권에 대한 유보 잔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표 10>에서 사용한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의 금액을 동일하게 이용하였다. 또한, “대손실적률”을 계산하기 위해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당기 또는 전기 이전의 대손금을 적용해야 하지만 동(同)요건의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상 대손상각비와 이를 반영한 회계상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을 동일하게 이용하였다.

<표 4>의 손금산입한도액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①)은 <표 5>와 같이 동(同)적립기준이 매우 복잡해서 직접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①을 별도로 추정하지 않더라도 4대 시중은행들의 전체 설정대상에 대한 적립금액(회계상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표 11>과 같이 IAS39 및 IFRS9의 적용기간과 무관하게 매년 1%보다 충분히 작고, 이것은 개별 4대 시중은행별로 분석하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同)적립금액이 <표 4>의 나머지 손금산입한도액인 기말채권잔액×1%(②) 또는 기말채권잔액×대손실적률(③)보다 큰 경우(즉,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손금산입한도액보다 커서 과세대상인 한도초과액이 계산되고, 이로 인해 추가적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표 12>의 분석대상 기간(2015년-2021년)과 함께 <표 13>의 장래 5년간에도(2022년-2026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의 세무조정 중에서 대표적인 결산조정 항목이기⁶³⁾ 때문에 <표 4>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해서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을 계상하는(기중에 대손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동(同)잔액의 추가계상을 통해 축소할 수 있었던 세금부담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⁶⁴⁾.

이러한 기회비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IAS39 → IFRS9의 전환에 의한 손실충당금 비율의 증가와 함께 2018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표 12>의 “적시인식비율”은 2017년말 이후 매년 발생한 대손충당금 적시인식의 일시적 차이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손실충당금 비율인데, 적시인식비율이 (+)인 연도는 IFRS9의 시행과 무관한 고유비율에 비해 손실충당금 비율이 커져서 시중은행들의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고, 반대로 적시인식비율이 (-)인 연도는 IFRS9의 시행과 무관한 고유비율에 비해 손실충당금 비율이 작아져서 시중은행들의 법인세 부담이 하게 되는 것이다.

63) “결산조정”이란 익금 또는 손금을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이고,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에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손금항목을 말한다. 이것은 객관적인 외부거래 없이 그 손금산입 여부가 법인 자신의 의사에 맡겨진 사항들이다(즉, 그 손금산입이 강제되지 않는 사항들이다.). 이러한 비용이 과대계상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해야 하지만, 계상되지 않거나 과소계상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할 수는 없다. 즉, 법인이 이러한 항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산조정(비용계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64) 물론 세금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대손상각비의 추가 계상이 시중은행들의 순이익을 감소시켜서 경영성과의 악화와 함께 자본시장의 부정적 평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전형적인 상충(trade-off)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반영해서 <표 12> 및 <표 13>과 같이 추정한 IFRS9의 적용 이후 누적적인 일시적 차이를 반영한(적시인식비용을 반영한)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및 장래 5년간의(2022년-2026년) 4대 시중은행의 법인세 부담액을 계산하면 <표 14> 및 <표 15>와 같다.

<표 14> 4대 시중은행의 IFRS9의 적용 이후 누적적인 일시적 차이를 반영한 법인세 부담액(2018년-2021년)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십억원)(①)	1,267,713	1,362,317	1,480,379	1,536,387	
적시인식비용(②)	0.04%	-0.05%	0.02%	0.02%	
과세대상 소득 증감액 (③=①×②×-1, 백만원)	-539,215	668,285	-313,324	-278,175	-462,428
법인세 부담액 증감액 (③×25% ^{*A} , 백만원)	-134,804	167,071	-78,331	-69,544	-115,607

* 자료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이용해서 저자 작성

^{*A} 연도별 법인세 최고세율⁶⁵⁾

<표 15> 4대 시중은행의 IFRS9의 적용 이후 누적적인 일시적 차이를 반영한 법인세 부담액(2022년-2026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 (십억원)(①) ⁶⁶⁾	1,638,050	1,746,441	1,862,003	1,985,212	2,116,574	
적시인식비용(②)	0.00%	0.00%	-0.02%	-0.01%	-0.01%	
과세대상 소득 증감액 (③=①×②×-1, 백만원)	-53,561	-39,743	281,383	267,103	246,148	701,330
법인세 부담액 증감액 (③×25%·24% ⁶⁷⁾ , 백만원)	-13,390	-9,538	67,532	64,105	59,075	167,784

* 자료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이용해서 저자 작성

<표 14>와 같이 4대 시중은행의 IFRS의 적용 이후 누적적인 일시적 차이를 반영해서 법인세 부담액은 과거 4년간(2018년-2021년) 1,156억원 감소한 반면 장래 5년간은(2022년-2026년) 1,67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2018년부터 IFRS9의 적용으로 대손

65) 3,000억원 이상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적용된다.

66) 2021년 이후의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은 2015년말과 2021년말의 기말잔액을 이용해서 계산한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의 연평균 증가율(6.6%)이 2022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하였다.

67)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를 반영해서 2023년 이후에는 24%를 적용하였다.

충당금의 적시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초기에는 IFRS9의 시행과 무관한 금융자산의 연도별 손실충당금 비율(고유비율)에 비해 실제 비율이 커져서(적시인식비율이 (+)가 되어서)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 반면 기간 경과에 따라 이러한 일시적 효과의 반전으로 인한 영향이 더욱 커져서(적시인식비율이 (-)가 되어서) 장래에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IFRS9의 시행 이후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그 동안의 대손충당금의 적시 손실 인식의 결과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에 어느 정도의 누적적 영향이 발생했는지와 함께 장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경제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IFRS9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범주의 단순화이다. 2017년 이전에 적용되었던 IAS39에서는 금융자산을 그 정의와 거래 형태 및 주관적 보유목적 등에 따라 단기매매금융자산(held-for-trading), 매도가능금융자산(available-for-sale), 만기보유금융자산(held-to-maturity) 및 대여금 및 수취채권(loans and receivables)의 4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에 반해 IFRS9는 유가증권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구분하여 정의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및 금융자산의 계약상 원리금 지급 현금흐름 특성 평가(SPPI test)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및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AC)의 3개 범주로 분류를 단순화하였다.

IFRS9의 다른 주요한 특징은 손실 인식의 적시성 강화이다. IAS39의 발생손실은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여 해당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고,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경기침체에 대량의 손상사건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고, 경기 순응성을 조장할 위험이 있었다. IFRS9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융상품의 기대 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인 기대신용손실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의 IFRS9의 시행 이후에 금융상품 분류기준의 단순화 및 손상 인식의 적시성 강화가 은행업의 회계처리 및 손실인식에 미친 중요한 영향은 최초 시행시점(2017년말 및 2018년초)의 전환효과와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연도별(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순증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4대 시중은행에 대한 개별적 분석결과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들 시중은행들에 대한 IFRS9의 종합적 시행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4대 시중은행의 2015년—2021년의 연평균 금융자산 증가율은 6.77%인데, 이것을 IAS39 및 IFRS9의 적용시기로 구분하면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66% 및 7.33%로 계산된다. 또한, IFRS9의 최초 적용을 전후한 2017년 및 2018년의 연간 증가율이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비교적 낮은 반면 다른 연도에는 연평균 증가율과 유사하거나 충분히 높고, 2017년말의 전환을 통해 금융자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비율이 0.03%(3,840억원)로 비교적 작기 때문에 IFRS9의 시행에 의해 시중은행들의 금융자산의 꾸준한 증가 추세가 2개 연도에 걸쳐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지만, 다시 원래의 추세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IFRS9의 시행이 시중은행들의 금융자산 계상액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IAS39 → IFRS9의 전환으로 인해 4대 시중은행의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이 16.2%(1조5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금융자산의 감소액은 모두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대 시중은행의 2017년말의 전환 당시 IAS39에 의한 손실충당금은 금융자산 금액의 0.49%인 반면 IFRS9에 의한 손실충당금은 금융자산의 0.57%로 0.08%p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 금융자산 중에서 손실충당금과는 무관한 범주인 IAS39의 단기매매금융자산 및 IFRS9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IAS39에 의한 손실충당금은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의 0.50%인 반면 IFRS9에 의한 손실충당금은 동(同)금융자산의 0.60%로 0.10%p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환 당시 IAS39에 의한 손실충당금은 전액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서 발생했는데, 대여금 및 수취채권 금액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비율은 0.58%인 반면 동(同)비율을 IFRS9에서 0.67%로 계산하면 0.09%p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손실충당금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포함되는 대출채권에서 발생했는데, 전환 당시 IAS39 및 IFRS9에 의한 대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비율은 각각 0.63% 및 0.72%로 0.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IAS39 → IFRS9의 전환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전환 시점인 2017년말에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금융자산의 총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설정비율이 증가했고, 이러한 결과가 IFRS9의 시행 직후인 2018년에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에 대한 일시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손실충당대상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비율은 분석대상 기간인 2015년—2021년에 자산관리의 효율화 노력 등을 반영해서 장기적인 하락추세를 보였는데, 이와 함께 2017년말의 IAS39 → IFRS9의 전환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을 반영해서 일시적으로 급등했고, 2020년의 일부 은행들의 특수한 상황(누적된 과소 대손전입액 보전 및 사업결합 등)으로 인해 동(同)추세에 대한 일시적 반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017년말의 IAS39 → IFRS9의 전환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은 대손충당금의 인식시점과 관련한 일시적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간 경과에 의해 반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2018년 이후에 매년 새롭게 반영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도 역시

기간 경과에 의해 반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이후에 연도별로 발생하는 손실충당금 비율의 일시적 차이는 2017년말과 같이 동(同)비율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함께 과다하게 계상한 손실충당금을 감액시켜서 효과가 반대인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비율을 IFRS9의 시행과 무관한 장기적 추세상의 비율(고유비율)과 함께 2017년말 이후 매년 발생한 대손충당금 적시인식의 일시적 차이가 당해연도와 함께 이후 연도들의 반전을 통해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 비율(적시인식비율)로 구분하면 4대 시중은행들의 IFRS9의 전환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의 영향은 손실충당금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대하여 IFRS9의 적용 초기에는 적시인식을 통한 일시적 차이가 동(同)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시중은행들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에 유의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래에는 이러한 효과가 축소되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 노력 등을 반영해서 동(同)비율이 장기적 추세에 근접함으로써 시중은행들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IFRS9의 회계상 시행효과와 별도로 시중은행의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으로 인해 과세대상 소득과 법인세 부담액에 최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IFRS9의 적용 이후 누적적인 일시적 차이를 반영해서 4대 시중은행의 법인세 부담액은 과거 4년간(2018년-2021년) 1,156억원 감소한 반면 장래 5년간은(2022년-2026년) 1,67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2018년부터 IFRS9의 적용으로 대손충당금의 적시인식이 이루어지면서 초기에는 IFRS9의 시행과 무관한 금융자산의 연도별 손실충당금 비율(고유비율)에 비해 실제 비율이 커져서(적시인식비율이 (+)가 되어서)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 반면 기간 경과에 따라 이러한 일시적 효과의 반전으로 인한 영향이 더욱 커져서(적시인식비율이 (-)가 되어서) 장래에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회계처리 및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시중은행에 대한 장래의 경영실적 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측면이 본 연구의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2015. 2018년부터 수익과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이 확 바뀝니다(2015.12.16.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201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적용영향분석을 위한 공개협의안.
- 김수성 · 고운성. 2011. “K-IFRS 도입에 따른 은행업의 대손충당금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0권 제1호 : 109-134.
- 김정우 · 나영. 2019. “은행의 조기손실인식이 경기순응성과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8권 제2호 : 361-405.
- 김진영. 2011. 국제회계기준 하의 은행업 대손충당금에 대한 사례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준범. 2018. IFRS9 시행이 은행 손익에 미치는 영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신유정 · 이영한. 2020. “IFRS9이 은행의 금융상품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와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9권 제4호 : 1-33.
- 은행연합회. 2018. 은행회계해설(상).
- 조영현 · 이혜은. 2018. IFRS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보험연구원.
- 조윤희. 2010.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은행업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 대손충당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회계기준원. 2016.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강의자료).
- Beerbaum, D. 2015.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according to IFRS9 : Implication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s* 4(9) : 1-3.
- Gebhardt, G. 2016. Impairments of Greek government bonds under IAS39 and IFRS9 : A case study. *Accounting in Europe* 13(2) : 169-196.
- Halep, M. 2015. The IFRS9 standard : Assessment of the impacts on the European banking industry. *Ovidius University Annals. Economic Sciences Series* 15(1) : 925-930.
- Novotny-Farkas, Z. 2016. The interaction of the IFRS9 expected loss approach with supervisory rules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stability. *Accounting in Europe* 13(2) : 197-227.
- Sultanoglu, B. 2018. Expected credit loss model by IFRS9 and its possible early impacts on European and Turkish banking sector. *World of Accounting Science* 20(3) : 476-506.
- 국가법령정보. law.go.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삼일인포마인. www.samili.com.

Effect of IFRS9's Fast Recognition of Loan Loss Provisions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Banking Industry

Byung Wook Ju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implementation of IFRS9 affects the management of banking industry focusing on fast recognition of loan loss provisions (“LLP” hereafter). IFRS9 itself narrowly reduced the balance of financial assets of major commercial banks, while the decrements were totally caused by the fast recognition of LLP, which is forced by IFRS9. Fast recognition of LLP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atio of LLP out of financial assets (“LLP ratio” hereafter) in the end of 2017, when the conversion into IFRS9 from IAS39 was coercive in banking industry, and negatively affected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major commercial banks in 2018. LLP ratio has shown a long-term decreasing trend reflecting efficient assets management, while it temporarily soared in the end of 2017 with the enforcement of IFRS9 and was partially reversed in 2020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of a few commercial banks.

〈Key words〉 IFRS9, Loan loss provisions, Loss recognition, Banking industry, Management performance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bwjun@uos.ac.kr